■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[별지 제13호서식]

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

주택신청 유형	□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, □ 소득50% 이하자, □ 소득70% 이하자			
신청인	성 명		주민등록번호	
	주 소			
	전화번호	휴대전화() - 집전화 () -	해당시·군·구 전입일	년 월 일
혼인 및 출생신고일	① 혼인신고일(재혼포함)			년 월 일
	② 혼인신고 이후 자녀 출생신고(입양신고)일(주민등록등본 기준)			년 월 일
신청순위	□1순위 (혼인7년 이내, 유자녀)		□2순위 (혼인7년 이내, 무자녀 또는 예비신혼부부)	
주택 및 자산현황	□ 무주택	□ 자산 및 자동차(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이하)		
	<작성요령 및 유의사항> 1.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. 2. 자산 및 자동차는 **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**의 경우 표기하지 않습니다. 3. 자산 및 자동차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.			

위와 같이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 신청인 (인)

시장(군수 · 구청장) 귀하

본인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(갱신계약 포함)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.

□ 동일순위 경쟁시의 배점항목(아래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)

평가항목	평가요소	배점	평가	평점
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	가.50% 이하 나.70% 이하	2점 1점	()%	()점
② 자녀의 수(민법상 미성년 자녀에 한함)	가.3인이상 나.2인 다.1인	3점 2점 1점	()인	()점
③ 혼인 기간(혼인신고일 기준)	가.3년 이내 나.3년 초과 5년 이내 다.5년 초과 7년 이내	3점 2점 1점	()년	()점
④ 신청인의 나이(만)	가.30세 미만 나.30세 이상 35세 미만 다.35세 이상	3점 2점 1점	()세	()점
⑤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(인정회차 기준, 신청인 명의의 통장만 인정)	가.24회 이상 납입 나.12회이상 24회미만 납입 다.6회이상 12회미만 납입	3점 2점 1점	()회	()점
⑥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 사업프로그램 또는 취업·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한 총 기간 (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)	가.24개월 이상 나.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.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	3점 2점 1점	()개월	()점
⑦ 신청인의 당해시(특별시, 광역시 포함)·군지역에서의 연속거주기간	가.3년 이상 나.1년 이상 3년 미만 다.1년 미만	3점 2점 1점	()개월	()점
⑧ 장애인 등록 여부	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(신청인 포함)	2점	등록증 교부여부 (o , ×)	()점
⑨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여부 (배우자 직계존속 포함)	65세이상 직계존속(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)부양	1점	부양여부 (o , ×)	()점

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.

	총점	점	소속		확인자	(인)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